

2017년 중견기업 관련 개정세법

- '16.12.5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-

※ 중견기업 관련 개정세법은 '16년 12월 말에 정부가 발표 예정인 “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”에 추가로 있을 수 있음

분류	내 용	현 행	개 정	중견기준 (3년평균매출)
연구개발	신성장·원천기술 R&D세액공제 (조특법 제10조)	·중소 30% ·중견·대기업 20%	중견·대기업 지원확대 ·(좌 등) ·일정요건 충족시 최대 30%까지 확대	기업전부
	R&D세액공제 증가분방식 (조특법 제10조)	중소 50%, 일반 40%	대기업 지원축소 중견구간 신설 중소 50%, 중견 40%, 대기업 30%	시행령 규정예정
	R&D세액공제 당기분방식 (조특법 제10조)	중소 25%, 중견 8~15%, 일반 2~3%	중견 5천억원 이상 & 대기업 지원축소 일반 1~3%	5천억원 미만
	기술취득 세액공제 (조특법 제12조)	중소기업만 7% 공제	중견·대기업까지 확대 ·중소 10% ·중견·대기업 5%	기업전부
	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5)	신 설	중소 10%, 중견 7%, 대기업 5% (‘18.12.31까지)	시행령 규정예정
투자	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2)	중소 6%, 중견 3%, 대기업 1% (‘16.12.31까지)	일몰연장 '18.12.31까지	3천억원 미만
	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3)	중소 10%, 중견 5%, 대기업 3% (‘16.12.31까지)	일몰연장 '18.12.31까지	3천억원 미만
	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4)	중소 7%, 중견 5%, 대기업 3% (‘16.12.31까지)	일몰연장 & 지원축소 중소 6%, 중견 3%, 대기업 1% (‘19.12.31까지)	3천억원 미만
	문화콘텐츠 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6)	신 설	중소 10%, 중견 7%, 대기업 3% (‘19.12.31까지)	시행령 규정예정
	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(조특법 제28조의2) <small>*법인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관</small>	중소기업만 가속상각 허용 (‘16.6.30까지)	중견까지 확대 및 일몰연장(‘17.6.30까지)	시행령 규정예정
	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(조특법 제104조의18)	·(비용지급시) 중소 25%, 중견 8~15%, 일반 2~3% ·(시설투자시) 중소 6%, 중견 3%, 일반 1% (‘16.12.31까지)	일몰연장 '19.12.31까지	(비용지급시) 5천억원 미만 (시설투자시) 3천억원 미만

분류	내 용	현 행	개 정	중견기준 (3년평균매출)
	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(조특법 제104조의24, 제118조의2)	·(법인세) 중견대기업은 완전 복귀시에만 지원 ·(관세) 중소기업이 국내 복귀위해 수입한 자본재 50 ~ 100% 감면	· 중견기업도 부분복귀시 법인세 감면 · 중견까지 확대	시행령 규정예정
	기업소득환류세 (법인세법 제56조)	·투자·임금증가·배당 가중치 1:1:1	가중치 조정 1:1.5:0.5 *기업이 배당보다 임금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고자 개정	자기자본 500억원 초과
수입	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(부가법 제50조의2)	제조 중소기업 중 수출비중 30%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지원	중견기업까지 확대	시행령 규정예정
상속세	가업상속공제 대상 (상증법 제18조의2②)	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	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명확화	3천억원 미만
	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(상증법 제18조의2⑤)	신 설	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이자가산하여 납부	3천억원 미만
	신고세액공제 (상증법 제69조)	상속세 공제금액의 10% 공제	공제율 축소 7%	기업전부

※기업소득환류세 :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,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일정금액을 투자, 임금,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('15.1.1부터 '17.12.31까지) (단,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)